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82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이건태·강준현·권칠승

김준혁 • 문진석 • 안규백

윤후덕 • 한준호 • 황정아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 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비밀유지의무 등)"을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 확 내용
-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 3.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 2.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 3. 의뢰인과 변호사 간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 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6조제3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 지권) ①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의무 및 권리가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 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 성 ·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3.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u><신</u>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7. (생략)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 는 경우
- 2.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 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 는 경우
- 3. 의뢰인과 변호사 간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 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6조제3항제1호의 승낙 을 강요한 자

4. ~ 7. (현행과 같음)